

■ 최신 판례 ■

[행정]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거리제한 관련 시행규칙과 조례의 관계

정원 변호사 | 박호경 변호사

1. 판결의 취지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(이하 ‘액화석유가스법’) 상 허가요건인 “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안전과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”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,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, 충전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·구조 및 특성,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입법 목적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.

조례에서 정한 인구밀집건물로부터의 거리제한(이하 ‘거리제한’)과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이 정한 저장설비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(이하 ‘이격거리’)가 상이하더라도, 위 거리제한은 동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반면, 이격거리는 동법 제3조 제4항에 근거한 것이어서, 규정 근거 및 목적이 다르다. 거리제한이 이 사건 이격거리와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, 이를 두고 액화석유가스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위배되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.

2. 사실관계

고양시장은 2010년 11월 19일 고양시 덕양구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던 A씨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, 조례에 규정된 ‘인구밀집 지역 건물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충전사업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였습니다. A씨는 위 조례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법이 정한 규제 수준을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

1심 법원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[별표3]에 따르면 '안전거리에 관한 부분은 위 [별표3]에서 정한 바와 같이 안전거리의 2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조례로 정할 수' 있을 뿐, 이를 초과하여 임의로 안전거리를 정할 수 있을 없는 것인데도, 고양시 조례 제6조 제1호의 거리제한규정은 액화석유가스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. 결국 무효인 조례를 근거로 한 처분임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.

3. 판결의 의의

몇 년 사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과 관련하여, 충전사업소의 안정성 확보 등을 강조하며 관련 규제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. 대법원은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기준 중 하나인 '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'을 충족하려면 도로의 폭이 지적공부 뿐만 아니라 실제 현황도 8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,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(대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0두25091 판결). 이 사건의 경우, 8m 도로로 계획되었으나 일부 구간에서 가로수 등이 도로를 침범하고 인근 주민이 무단으로 돌담을 설치하여 8m 폭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. 또한 헌법재판소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부지는 그 일면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을 요구하는 강남구 허가기준에 대하여,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기준 설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입법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실시하며 기본권 침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(헌법재판소 2008. 4. 24. 자 2007헌마243 결정).

대상판결에서 원심은 충전사업소 설치와 관련한 거리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조례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의 규제대상 및 목적이 동일하다고 보았으며, 위 조례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반면, 대법원은 조례는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, 그 기준이 시행규칙의 기준과 외견상 상이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거리제한 관련 행정규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, 각 규제의 목적

이 어떠한 이유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상세한 설시를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.

4. 다운로드 : [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2두8205 판결](#)